

(參 照)

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
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- 3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중 서울특별시 수입분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九老區九老洞所在廢車場移轉要求請願의件(李秉直·金箕英議員 紹介)

(10時 53分)

○委員長 柳準向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九老區 九老洞 所在 廢車場 移轉要求 請願의件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本 請願은 지난 第73回 臨時會에서 朴夏榮, 韓瑞奎, 吳世根 세 분의 委員님이 請願 審査小委員會를 構成해서 現場을 踏査하였고, 한편 法律的 問題를 檢討하는 등 그 동안 深度 있고도 진지하게 檢討를 하였으므로 小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에 대해서 說明을 듣도록 하였습니다.

그러면 朴夏榮 小委員長님 나오셔서 請願 審査 結果에 대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請願 審査小委員會委員長 朴夏榮 請願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.

(報 告)

○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하영의원입니다. 본 청원은 '94년 8월 7일 이병직·김기영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제73회 임시회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

하여 심사토록 하였던 것입니다.

○본 청원의 요지는

-구로구 구로동 474-3 소재 폐차사업장인 한국슈레다산업주식회사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폐차작업시 발생하는 소음·분진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차장을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.

○이와 같은 주민의 요구를 현장답사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

- 자동차 폐차업 시설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5조에 근거하며 본 사업장의 위치 및 면적은 규정에 합당하고
- 사업장의 환경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과 기름을 분리하여 기름은 소각토록 하고 있으며
-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산면지 발생사업은 주조업·제철업 및 제강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차산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○이상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허가업체가 만약 허가사항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따르지 않는다면 허가취소도 가능한 것입니다.

○그래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 검토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문제의 사업장이 법률적 근거를 위반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 하였고,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합당하다고 허가를 내준 사업을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강제 이주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○한편, 사업주체가 설사 법규를 어기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겪고있는 고통은 현실적 문제이므로 사업주 측이 최대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